

## 중소·중견기업, 이자부담은 줄이고 녹색투자는 늘린다

-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비용 기업당 연간 최대 3억까지 지원, 1년에서 3년으로 지원기간 연장

환경부(장관 김완섭)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‘녹색자산유동화증권\* 발행 지원사업’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접수를 1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.

- \*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장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친환경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

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‘녹색자산유동화증권’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비용 전체를 지원한다.

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이 발행한 회사채(3년물)의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\*으로 확대한다.

- \* 1차년 중소기업 3%p, 중견기업 2%p / 2·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% 내외 지원

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(2024년도) 한 해 동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,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.

‘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’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평균 8,6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.

올해(2025년도) ‘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’은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은 기업 재무 상황, 사업 성격 등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.

‘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’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(me.go.kr)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(keiti.re.kr)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“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녹색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녹색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”이라면서, “중소·중견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전문용어 설명.  
 2.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.  
 3.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공고문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	마재정 (044-201-6678)
		담당자	사무관	이희선 (044-201-6690)
	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	책임자	실 장	조기숙 (02-2284-1960)
		담당자	책임연구원	홍은아 (02-2284-1974)



## 붙임 1

## 전문용어 설명

### □ 유동화

-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증권으로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
-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, 유동화 과정을 통해 현금 등의 확보가 용이해짐

### □ 자산유동화

- 유동화자산을 보유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기구를 매개로 하여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함

<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>



### □ 유동화자산

-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, 기초자산이라고도 함
- 동산, 부동산, 채권, 증권, 지식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유동화 가능(양도 가능하여야 함)

### □ 유동화증권

-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

### □ 유동화전문회사

- 유동화자산의 양수·양도, 유동화증권의 발행·상환, 자산유동화계획 수행에 필요한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상의 회사

### □ 녹색자산유동화

- 중소·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(유동성 낮음)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자산을 선별하여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증권으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

## 붙임 2

##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

대상 업무	주요 내용	수행기관
대상기업 공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 대상 기업 공모</li> <li>• 대상 기업 발굴 협력</li> </ul>	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
외부검토기관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용평가사 등 대상 선정</li> </ul>	한국환경산업기술원
1차 검토 및 추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1차 평가 후 적합 기업을 신보/기보에 추천</li> </ul>	한국환경산업기술원
P-CBO 심사·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추천기업에 대한 영업점 배정</li> <li>• P-CBO 편입 심사·승인 (전문심사센터 승인분 포함)</li> </ul>	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
편입승인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P-CBO 편입 승인분 기술원 통보</li> </ul>	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
선정평가 결과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정평가로 편입 승인기업 선정</li> </ul>	한국환경산업기술원
외부적합성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정기업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판단의뢰 및 평가 실시</li> </ul>	한국환경산업기술원 외부검토기관
외부 적합성평가 결과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부 검토기관 평가 결과의 신보 통보</li> </ul>	한국환경산업기술원
최종 지원 대상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합 기업) 이차보전 지원 대상</li> <li>• (부적합기업) 일반 P-CBO 보증 대상</li> </ul>	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
보증사업심사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동화회사 보증 승인</li> </ul>	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
유동화증권 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G-ABS / 일반 ABS 발행</li> </ul>	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

**「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」 공고**

「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·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월 13일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## 1

## 사업 목적

-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(그린워싱)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성화 유도
- 녹색금융에 대한 중소·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사업 관련 민간자본 참여 유도

## 2

## 공고 개요

- (사업명) 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
- (지원규모) 10,000백만원
  -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- (지원대상)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(회사채)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·중견기업
- (지원내용)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차비용 일부\* 지원
  - \* 1차년 중소기업은 기초자산(회사채) 발행금리의 3%p, 중견기업은 2%p
  - 2·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% 내외
- (지원기간)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

- (신청자격)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사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중소·중견기업

구 분		내 용
이차보전	지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</li> <li>○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 만기일이 3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·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·상환일 전일까지로 함</li> </ul>
	지원한도	○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
	지원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차년 중소기업 : 자산(회사채) 발행액의 연율 3%p 이내</li> <li>○ 1차년 중견기업 : 자산(회사채) 발행액의 연율 2%p 이내</li> <li>※ 1) 2·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% 내외, 단,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공고 등을 통해 변경 가능</li> <li>2) 발행금리가 지원금리보다 작은 경우, 발행금리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</li> <li>3) 원 단위 이하 금액 절사</li> </ul>

- (참여 제한)

-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, 기보,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,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,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
-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
-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(부도) 기업
-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
- 회생절차,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
-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
- 휴·폐업 및 국세,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
- 신용불량(관리)정보 보유기업(대표자, 실제경영자 포함)
-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
-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
-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

-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
-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“부적정” 또는 “의견거절”인 기업
- 금융업 영위 기업
-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
-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
-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
-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
-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변경 기업

**4**

**신청 자격 및 금융기관별 발행 일정**

- (신청자격) 한국형 녹색분류체계\*에 부합하는 사업(프로젝트)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

\* 6대 환경목표(온실가스 감축, 기후변화 적응,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, 순환경제로의 전환, 오염 방지 및 관리, 생물다양성 보전)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

구 분	주요 내용
중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(프로젝트)을 영위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</li> <li>○ 해당 사업(프로젝트)의 조달자금이 <b>시설 및 운전자금*</b>으로 사용될 것 * 해당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(인건비, 원재료 구입비, 공장·창고·설비 임차료 등)</li> </ul>
중견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(프로젝트)을 영위하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</li> <li>○ 해당 사업(프로젝트)의 조달자금이 <b>시설자금으로만 사용될 것</b></li> </ul>

※ 참여기업은 해당연도(~'25.12.31)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

-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일정

- 신용보증기금: '25. 3월, 4월, 5월, 9월, 10월(5회) 예정
- 기술보증기금: '25. 6월, 11월(2회) 예정

※ 추진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## 5

##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

- (신청대상)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(예정)하여 유동화 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·중견기업(신용보증기금 3.28. 발행 예정)
- (접수기간) 신보 1차: 2025. 1. 13.(월) ~ 2. 6.(목) 18:00까지  
※ 금융기관별 발행일정에 따라 접수기간 별도 공지
- (접수방법) 온라인(전자우편) 접수
- (접 수 처) gabs@keiti.re.kr

※ (문의)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

- 전현선 연구원 (02) 2284-1983 / 김경완 연구원 (02) 2284-1989 /  
홍은아 연구원 (02) 2284-1974

- (제출서류)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안내서 참고

순번	제출서류	양식
1	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	붙임1
2	사업계획서	붙임2
3	확약서	붙임3
4	사전체크리스트	붙임4
5	적합성판단 요청서	붙임5
6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붙임6
7	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관련 증빙서류	-